

한해가 가고 14번째 신년호를 발행하며 해마다 신년호의 감회를 금년에도 반복한다.

첫째, 지난 일년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는 그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새해에는 이러한 후회가 없도록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한번 해본다.

둘째는, 그 어려운 중에도 원고를 집필하여 주시고 광고로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독자들에게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다.

그외에 편집위원이나 인쇄소는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해가 바뀌고 새출발하는 신년호를 만드는 기회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잇기가 쉽다. 이런면에서도 새해의 시작은 필요한가보다.

해가 바뀌고 새출발한다는 의미는 모든 잘못

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뜻이며 우리의 마음도 새로와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설계를 하며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생활을 하여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1년후에는 84년 1월이 된다는 것과 1년후에는 월간양계 84년 1월호가 발행된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천자는 우리의 노력없이도 되나 후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없이 안된다.

새해에는 협회도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도 83년 축산진흥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이 12개월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

우리업계의 당면문제중의 하나인 유통구조개선도 흔히들 외국의 경우에 이렇게하고 있으니 우리도 세월이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월이가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 처럼 유통구조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우화 하나를 소개하며 새해에 우리들이 다같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설계를 힘차게 밀고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어느사람이 손금을 보았더니 입금이 될 손금



이었다 한다.

사주를 보아도 관상을 보아도 왕이 될 사주이고 관상이었다.

외모도 훌륭하고 때도 잘 타고났으며 인품이나 무엇으로 보아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왕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시시한 일은 할수도없어 방에 앉아서 임금이 될때만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10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고 또 몇년이 흘러 이제는 늙어 죽게되었다.

왕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죽게되자 이제는 급해서 부인을 마지막으로 불러본다.

황후는 게 있는가? 짐이 붕어하게 되었으니 급히 황태자를 불러오시오.

부인은 밖에나가 노는 자식을 부르려간 사이에 혼자 죽고 말았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저절로 해결 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알아두면 편리한 개정된 세법

금년부터 시행되는 몇가지 바뀐 사항을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소개한다.

1. 신규업자의 소득세 감면

지난달에 이미 본란(12월호 p. 23)을 통해 보도된대로 신규업자에 한하여(사업개시 후 첫소득 발생년도와 그후 5년) 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다.

종전 감면을 받던 내국인은 부칙 제1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것도 86년도 사업분으로 모든 감면혜택은 끝난다.

※ 개정세법내용

조세감면 규제법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82. 12).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기업합리화 저리금의 직립)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26조,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43조, 제55조,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

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2. 1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 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91조제 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의 면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8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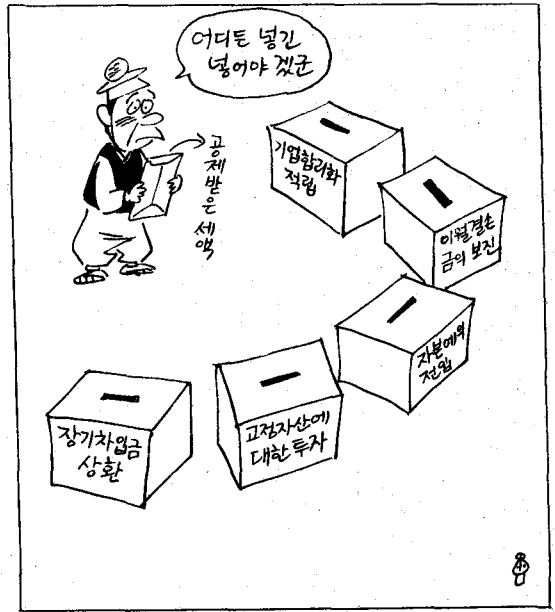
①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 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② 생략

③ 제91조 제 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 9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 생략

제93조(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 기본 또는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하거나 보세 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 8 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생략

④ 제 20조 및 제 37조의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18 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 4조의 8 제 2항 제 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 제 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종전의 제 4조의 8 제 1항 제 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 기간에 한하여 제 3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종전의 제 4조의 8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 17조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 17 조 (중요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종전의 제 48조의 8 제 1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당시의 미공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전의 제 4조의 8 제 1항 제 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 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② 생략

③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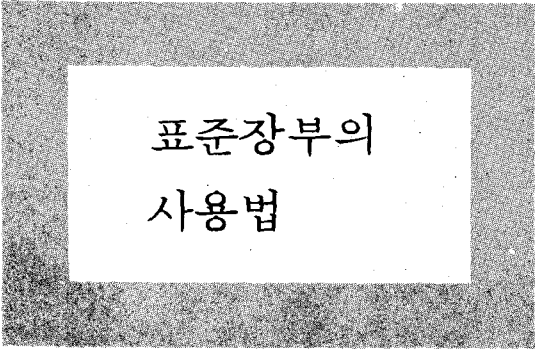
장부기장을 하고 싶어도 현행 장부제도가 갖는 복잡성, 불합리성 등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장부제도를 대폭간소화 한 것이다.

표준장부의 제정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별도로 경리담당 직원을 둘 형편이 못되어도 쉽게 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장부는 크게는 제조업용, 판매업용, 서어비스업용의 3가지로 나뉘어지며 축산업은 서어비스업용 표준장부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개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기타자세한 것은 본회 편집부(752-6917)나 다음의 기관에 문의 하면 된다.

기 관 명	담당부서	상 담 전 화
국 세 청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중앙세무상담실	서울(634) 8101~9 서울(724) 2100, (725) 2100
지 방 국 세 청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서울(765) 0160~9 대전 (22) 5171~7 광주 (2) 2283~7 대구 (44) 9091~8 부산 (43) 0161~9
세 무 서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상 담 실	(해당세무서 국번) 2100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	경영상담과 기장지도반	서울 (직) (28) 2045 서울 (교) (777) 8031~42
지방상공회의소	진 흥 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 회	상 담 실 기 장 지 도 반	서울(724) 2731~5 수원 (5) 0230 대전 (22) 4598 광주 (7) 5141 대구 (23) 9618 부산 (69) 6030
한국공인회계사회	세 무 상 담 실	서울(724) 6648
한국세무사회	"	서울(717) 0965



국세청은 조세마찰을 줄이고 명량한 세정구현을 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나친 세무조사는 오히려 납세자의 마찰을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지극히 불성실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세에 있어서도 3월 법인세신고가 끝나면 시행하던 실지조사도 지난해의 경우 법인관리 유형 가운데 보통신고 법인으로 분류되는 법인중 연간외형 5억원 미만 법인과 연간 외형 10억원 미만 법인으로 신고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인은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장부나 증빙서류 만으로 간이조사로 대체하고 있다.

소득세에 있어서도 5월의 확정신고 후 실지조사를, 외형현실화도가 특별히 낮을 때, 상승적 결손신고자, 외형이 큰데도 신고소득율이 현저히 낮을 때 등 불성실 하다고 인정될 때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모두가 성실신고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업종별 표준장부를 만들어

1. 장부의 필요성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할 필요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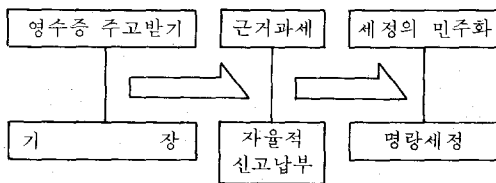
○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실적 파악 및 경영의 합리화

○ 상거래의 증빙유지, 보존 및 채권 채무의 확인

○ 기업내부 업무의 감독, 통제 및 기업이익 보호

○ 정당한 자기부담 세액의 산출근거

가 되는 등에 있으며 근거과세를 통한 공평과세와 자율적인 신고 납부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정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과세이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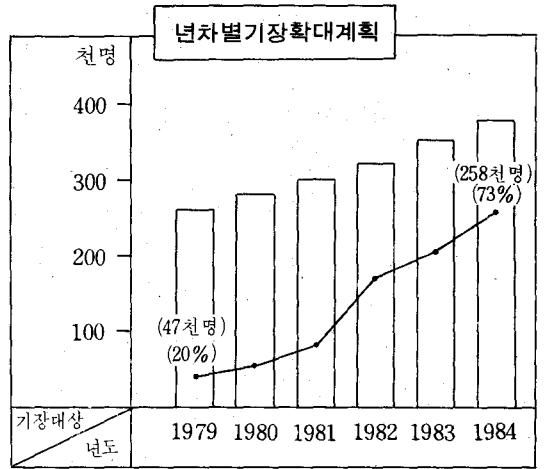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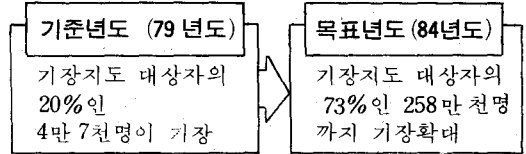
○ 기장 확대 5개년 계획

국세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장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80년도부터 기장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이 계획은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부동산소득자는 연간 수입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장지도 사업을 실



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기장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장을 새로하고자 하여도 기장법을 모르는 사업자는 세무관서나 위탁기장 지도단체에 기장지도를 희망하면 다음과 같이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으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지도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무료로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다.

기장지도의 방법과 범위

기장지도구분	기장지도자	기장지도범위
위탁 기장 지도	• 세무사, 공인회계사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성실신고회원조합 등의 기장지도요원	• 장부의 기장방법과 절차 작성 •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
	• 세무공무원	•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원천징수등의 관련서류 • 기타 세무관련사항

2. 현행기장제도

우리의 세정에서 추계과세를 추방하고 근거에 의

한 실질과세를 하는 것은 합리세정의 구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규모에 따른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장을 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기장의무 및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

법적근거	기장의무 구분	대 상	비치하여야 할 장부
소득세법 (제184조)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억5천만원 이상자 (보관, 대리등은 6천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의무자	직전년도수입금액 8천만원이상자 (보관, 대리등은 2천만원이상자)	•현금출납부, 매출장, 매입장, 경비장 및 상품제품 수불부 •또는 표준간이장부
	일기장 의무자	기타의 사업자	•일기장 •또는표준간이장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매입매출장 •또는표준간이장부

기장자에 대한 혜택과 무기장자의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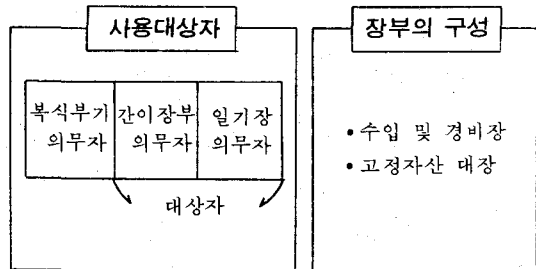
구분	기장의무별	기장자에 대한 혜택	무기장자의 불이익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결손금 인정 → 세부담 배제	•결손금 부인 → 추계과세로 세부담 불가피 •산출세액의 10%가산세 부담
	간이기장 의무자	•결손금 인정 → 세부담 배제 •산출세액의 10%공제	•결손금 부인 → 추계과세로 세부담 불가피 •산출세액의 10%가산세부담
	일기장 의무자	•결손금 인정 → 세부담배제 •산출세액의 10%공제	•결손금 부인 → 추계과세로 세부담 불가피
부가가치세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과금 부담

3. 서어비스업용 표준장부란 ?

서어비스업용 표준장부란 현행장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최소한 세무상의 기본목적인 소득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장부를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정고시한 장부이다.

○사용대상자와 표준장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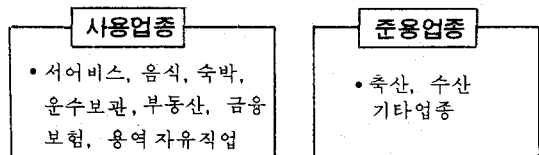
이 장부는 비교적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장부의무자와 일기장의무자를 그 사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부의 구성도 대폭 간소화하여 간이장부의무자와 일기장의무자 공히 수입 및 경비장과 고정자산대장만 기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서어비스업의 경우 현행법이 매입매출장을 기장하도록 하는 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장 및 경비장 대신 수입 및 경비장을 기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기업편의를 도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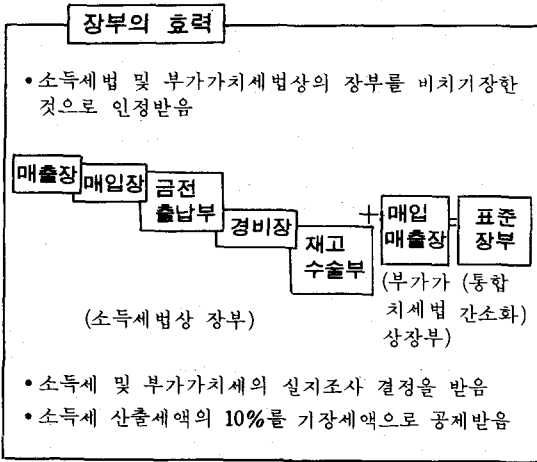
○사용대상업종

이 장부는 서어비스업용으로서 좁은 의미의 서어비스업 이외에 넓은 의미의 서어비스업에 해당하는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용역 및 자유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 장부를 사용하며 또한 회계처리절차가 유사한 축산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업종용 표준장부가 추후 제정될 때까지 이 장부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표준장부의 효력

관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이 장부를 성실히 기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 회계관습의 존중

이 장부는 간소한 단식부기원리에 의한 장부로서 이 장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기장은 건전한 회계관습에 의하여야 하며 이 장부의 사용 대상자인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거나 보조부를 성실히 기장한 경우에는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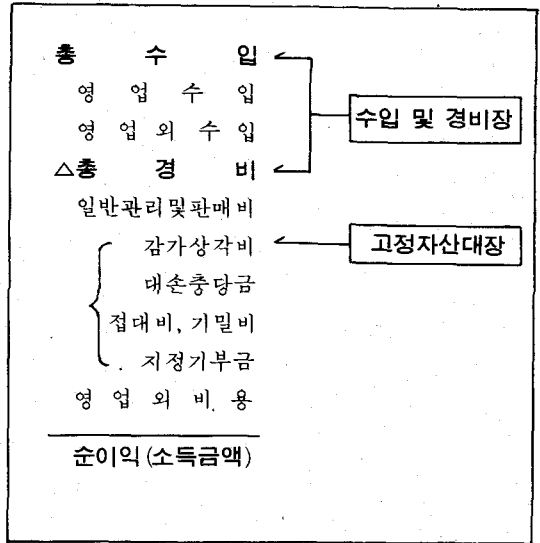


4. 장부의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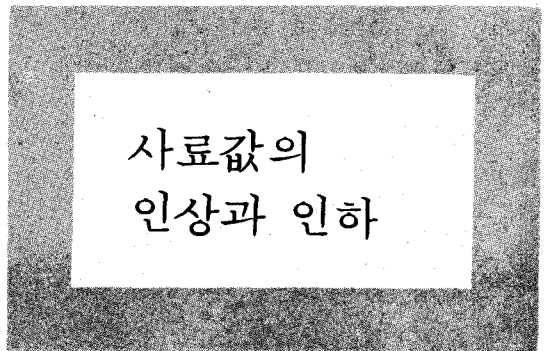
가. 장부의 내용과 기장요령

서어비스업용 표준장부는

- 일체의 수입금액 및 경비를 기장하는 수입 및 경비장
-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한 고정자산대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장요령 : 생략



지난해에 도입사료용 옥수수값이 톤당 135 \$로 10 \$ 인하조정되었고 이는 11월 1일 도착모선분부터 시행됨으로 실제 양축가들에게는 12

월 초부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어졌다.

본지 지난해 11월호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가격은 내리기 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옥수수 가격의 톤당 10\$ 인하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조정한 회사들도 상당 수있어 양축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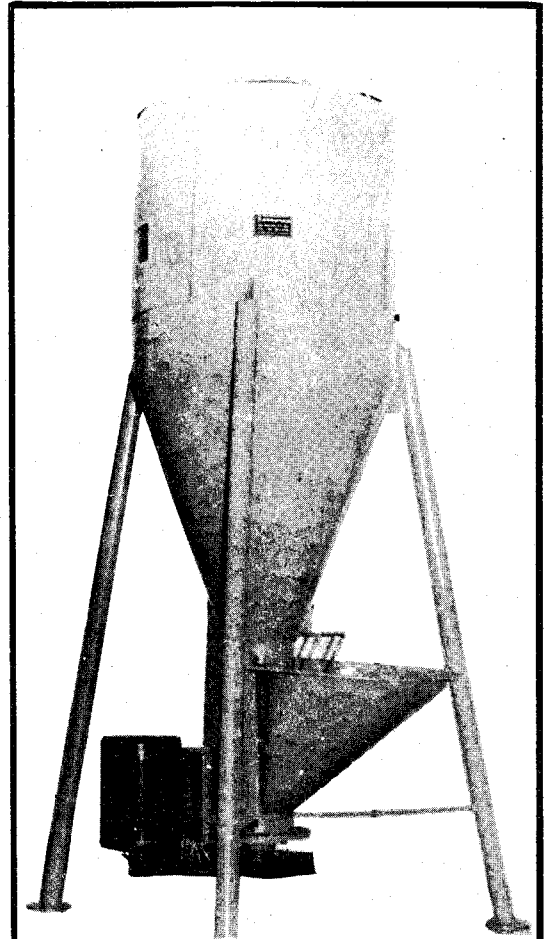
배합사료 가격이 자율화된 후에 아직도 이 제도에 양축가들이 익숙하지 못해 회사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감각에 혼란이 오게 되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고 또 계절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해소되리라고 보지만 일반 양축가의 궁급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간단히 사료 가격에 대해 설명코자 한다.

사료 가격은 원칙적으로 자율화 되었으므로 회사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원료를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려 왔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그 형편이 다르고 또 판매정책에 따라 가격조정 시기나 사료 품목별 가격조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월 1일 이후에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옥수수의 경우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있어 의재매입공제 기준을 도착 기준가격으로 제시하던 것을 선적기준(FOB)으로 하게 되어 옥수수가 kg당 2~3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국산옥수수 66,000t을 사용함에 따라 여기에서도 약3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외 강피류가격 인상으로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배합사료 원료 중 옥수수 가격이 가장 싸기 때문에 옥수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따라 단백질 수준을 맞추게 되어 이로 인한 품질향상에 따라 그 수준의 차에 차이가 있지만 약2원 정도의 인상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모두 반영된다 하여도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폭은 약2% 정도로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료혼합기

과학적인 설계로 배합속도가 빠르고 배합이 정확하며 모타의 하부 장착으로 안정되게 가동됩니다.

100kg, 200kg, 기타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